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옥외영업장 영업시간, 행위 제한 규정(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

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①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더존마트~롯데마트, 520m)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接客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기타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설치된接客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 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9. 신고된 옥외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생략)

13. 영업장과 연접하여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료 등 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소 관 부 서		식품위생과
입 안 자	과 장	이 연 우
	담 당	함 미 숙
	담 당 자	임 한 나 (480-5547)